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조).
- 나.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안 제3조).
- 다.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충청북도지방교육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4조, 제5조).
- 라.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 기금출납원에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함(안 제7조).
- 바. 기금관리·운용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부칙 제3조).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관리국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 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